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89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2. 18.

이쌍자 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2. 2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3. 17.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이정숙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2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장혜정)

-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지원(안 제5조~제6조)
 -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와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기념, 교육, 홍보,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군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3. 17.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